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630
- 발 의 자 : 이종배 의원(찬성 20명)
- 발 의 일 : 2024년 2월 5일
-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 2. 제안이유

-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도 낮은 0.59명으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아동의 경우 부모의 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하원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나, 대기인원 등의 문제로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임.
- 이에 현행 조례의 공무원 근무시간 규정에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1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6시까지로 명시함으로써 유치원·어린이집 하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공무원의 근무시간 규정에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1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6시까지로 명시함 (안 제13조제2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입법예고(2024.2.14. ~ 2.18.) 결과: 의견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 중 한 명의 1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6시까지로 조정하여(안 제13조제2항)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생략)                                                                                                                             |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성질·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br>-----<br>-----<br>-----<br>-----<br>-----<br>----- 있도록 하고, <u>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부모 모두 공무원인 경우 한 명만 해당된다.</u> |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1)에서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상시 근무시간(1일 8시간)을 조례에 달리 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행정국은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1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6시까지로 규정할 경우 개인의 인사상 불이익(복무·보수·복지 등)이 발생하고, 현행 유급 특별휴가 형태의 육아시간을 지원하고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 개인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제도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sup>2)</sup>에 있음.

- 전일제공무원(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주 15~35시간)를 신청하여 근무 가능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⑦ (생략)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규정내용은 법제처 의견제시(의견12-0370)에 따르면,

- 지방공무원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나 체계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상시적인 ‘근무시간 자체’를 점심시간을 제외한 1주간 40시간 보다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 이를 준수하되 ‘근무시간대’를 9시부터 18시까지가 아닌 다른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지방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로기준과 보수지급의 원칙을 하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통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주 40시간, 하루 8시간)은 대외적으로는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시간이며,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복무규율이나 초과근무가 정해지고,

지방공무원의 보수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보수체계의 근간이 되는 기준인 바,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달리 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만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의 상시적인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주 40시간보다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다른 행정기관과의 업무의 유기적 연계나 인사행정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고,

상시적인 근무시간을 전제로 업무를 분석·평가하여 직무급·연봉급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각 규정 간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무 관련 체계의 정합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아울러,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별도로 ‘임용’하도록 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의 상시적 근무시간을 재량적으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지방공무원법령의 취지나 체계에 비추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근무시간대를 9시부터 18시까지가 아닌 다른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대통령령 공식 유권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해석은 조례로 지방공무원의 상시 근무시간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인 바,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번 임시회에 시장발의로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6세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       |       |
|------|-------|-------|-------|
| 전문위원 | 정 찬 일 | 입법조사관 | 이 태 기 |
|------|-------|-------|-------|